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화성시

내 용

화성시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화성시(○○○○○)는 2015. 4. 9.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³⁴⁾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34) 입법예고기간: 2015. 4. 9. ~ 4. 14.(5일간)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앞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